

(비공식 번역본)



투자촉진위원회 지사 안내사항

프로젝트와 실행 착수에 대한 정책 변경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추가적인 권리와 혜택을 받는 프로젝트

2015년 12월 15일에 고시된 투자위원회 안내사항 제 11/2558호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따르는 추가적인 권리와 혜택을 받는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투자위원회 지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시함

1. 추가적인 작업시간을 통해 생산을 늘리는 경우 투자촉진 인증서에 기재된 정해진 기계의 작동 시간을 늘릴수있으며 이는 2000년 9월 28일에 고시된 투자촉진위원회 지사 안내사항 제 Por.8/2543호 투자지원법에 따름
2.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 생산을 늘리는 경우, 투자를 늘리지 않고 생산을 늘리는 경우 또는 생산량은 유지한채 투자의 크기를 늘리는 경우 지사는 투자촉진법을 따른 추가적인 혜택이나 권리를 받는 경우에 투자촉진 인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넘어서면 허가하지않지만 투자촉진을 받는 자는 권리나 혜택 또는 프로젝트의 조건을 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맞게 먼저 변경해야하고 지사는 생산이나 투자의 크기에 대해서 규정에 맞게 그 이후에 조사를 실시함
3. 작업의 시간을 줄이면서 생산을 줄이는 경우 또는 이미 존재하고있는 기계의 생산에 따른 생산이나 투자를 줄이는 경우 투자촉진 인증서에 기재된 내용의 조건에 대한 하한선을 넘지않는 선에서 가능

위와 같은 내용을 고시함

투자촉진위원회 지사

2019년 11월 13일